

VERESCENCE PACIFIC
GENERAL PURCHASING TERMS OF PRODUCTS AND/OR SERVICES
DECEMBER 2021

1-일반조항

본 일반매수조건은 주식회사 베르상스 퍼시픽(이하 “매수인”)이 판매자에게 주문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매수주문에 적용됩니다.

단, 매수인과 판매자의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생산도급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거래에는 본 일반매수조건 외 매수인의 「표준생산도급계약서」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2-하도급

판매자는 매수인이 사전 서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결된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 하도급하지 않는다.

3-서비스

판매자가 매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현행 법령, 해당 기술분문의 규칙, 그리고 특히 환경, 위생, 건강, 안전 법령 및 근무조건에 관한 적용법령에 따라 주문된 서비스를 이행한다. 판매자는 한편으로 서비스의 적정 수행, 필요 수단 및 재료를 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책임 및 지휘하에 있는 직원의 역량을 보장한다.

매수인이 판매자에게 임무의 이행을 위하여 위탁하는 매수인 소유의 제품은 물리적 및 법적으로 판매자가 보관한다. 판매자는 위탁 중인 매수인 소유 제품의 수량 부족, 파손 또는 손괴 및 일반적인 손상에 대하여,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4-주문의 변경

매수인은 주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을 판매자에게 통지한다. 매수인의 요청 통지를 받은 즉시 판매자는 객관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 증가 및 납품 일정 지연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을 때의 결과를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요청된 변경사항에 따른 비용 증가 및 납품 일정 지연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변경 주문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만일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는 변경 전 주문의 조건으로 주문을 이행하되, 납품 일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 만일 매수인이 주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해지 시점까지 판매자에게 발생한 제작 비용 등 손해를 배상하고 주문을 해지할 수 있다.

5-납품

- 납품일정 지연

판매자는 주문에 기재된 제품 및 서비스의 납품 및/또는 이행 장소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납품 및/또는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율은 연 6%로 한다.

- 문서

판매자가 납품을 하는 경우 납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납품서에는 매수 주문의 수량, 총 공급수량, 납품 포장 수량 및 구체적인 포장 단위 별 수량 및 종류,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문서들, 즉, 안전 정보 시트, 기술 매뉴얼 및 계획, 고용 및 지시 매뉴얼, 적합성 주의사항 확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 포장

제품들은 적용법령에 따라, 포장 단위로 표시 및 라벨이 부착되어 납품되어야 한다. 제품들의 포장은 특성상,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한 취급 및 운송 조건에서 제품, 사람 및 재산의 최상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6-준법-품질관리-수령

-준법

제품과 서비스들은 계약 사양 및 매수인의 사용 용도를 준수하고, 품질기준 외에도 적용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제품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권고하고 알릴 의무가 있다.

-품질관리

판매자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및 실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속적인 자체 품질관리를 포함하는 품질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준법을 보장하여야 한다.

-수령

서비스의 경우, 최종 수락은 매수인이 보류 없이 인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매수인은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법령상 허용이 되는 한, 판매자에게 상시로 여하한 수단으로(팩스, 이메일 등) 판매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또는 개봉이나 후속 점검 중에 제품의 손실, 손해 또는 부적합성을 통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매수인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품의 하자 발생시 판매자의 비용으로 제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영향 없이 주문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의 비용으로 반송 대상 제품을 거절 통지로부터 8 일 이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7-보증

판매자는 납품 제품 또는 서비스가 용도측면에서 부적합해지도록 하는 숨은 하자에 대한 보증을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계약상 보증과 위 법률의 적용 및 아래 제 12 조 “계약종료”의 규정에 영향 없이, 판매자는 공급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숙련도 또는 재료 결함 및 모든 운영상 하자에 대하여 납품일부터 24 개월 동안 보증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특히 동 기간 동안 자신의 비용, 노동으로 필요한 하자 제품 또는 부품의 보수 또는 교체를 제공한다. 부품의 교체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은 교체일에 개시되어 원래 부품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

8-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납품일에 이루어진다. 매수인은 판매자의 납품의무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9-제정 조건

- 가격

당사자간에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가격은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최종 고정 가격이다.

- 청구서

각 주문은 별도로 청구된다. 청구서는 납품 완료 후에 2 개 부분으로, 주문서상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된다.

청구서는 법적 조건 이외에도 주문번호, 납품서 참조사항 및 형식을 불문하고, 판매자의 수령을 표시하여야 한다.

- 지급조건 - 지급- 연체이자

당사자간에 달리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의 대금은 판매자의 청구서 발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0 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은 은행계좌 이체로 한다.

위 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서는 연 6%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단,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매수인의 지급 불이행이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부적합성, 판매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가항력이 원인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10-지적재산권

판매자는 매수인이 주문한 제품의 제조 및 이용 및/또는 서비스의 적정 이행과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 노하우 및 절차들을 판매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제 3 자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소유함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본 조항을 위반하여 제 3 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권 및 법률소송에 대하여 매수인을 면책 시켜야 한다.

판매자가 판매한 주문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제 3 자가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판매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통지하고, 본인 선택에 따라, 판매자와 함께 그러한 주장에 방어하거나 판매자에게 매수인의 방어를 보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양 사안의 경우, 판매자가 본 방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 비용 및 경비를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또한 판매자는 문제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나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불가능하게 되어 초래된 재정적 결과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판매자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매수인이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 3 자와 협의 및 타협하고, 최소한 기능적으로 동등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변경 또는 교체하되, 매수인에게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 조치들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매수인이 판매자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 없이 매수인이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한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판매자가 매수인에게 납품한 모든 창작물은 달리 명시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한, 제 3 자의 권리로부터 자유롭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모든 창작물의 제공은 현재 또는 장래 절차와 관련된 매체를 불문하고,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전부를 매수인의 이익으로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매수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은 판매자가 양도되는 전체 권리를 보장하는 일시불 금액으로 수락한다.

11-책임-보험

판매자는 단독, 배타적인 책임으로 주문의 실행을 보장한다.

판매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수인 또는 제 3 자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판매자 또는 그의 권한 하에 있는 자 및 보관 중인 재산이 원인인지를 불문한다.

판매자는 주문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및 손해와 관련된 모든 직간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매자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험을 현재 운영중인, 인지도 높은 보험회사로부터 구입하고 본 일반조건에 정의된 의무의 기간 동안 유지한다. 판매자는 매수인의 첫 요청이 있을 때 보험증권을 제시한다.

12-계약종료

각 당사자는 상대방사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고 그러한 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주문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VERESCENCE PACIFIC
GENERAL PURCHASING TERMS OF PRODUCTS AND/OR SERVICES
DECEMBER 2021

그러나 매수인과 판매자는 건설적인 협력의 원칙에 따라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판매자는 불법행위나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로부터 매수인을 면책하고, 완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판매자가 직접 또는 다른 판매자들과 함께 한 주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계약종료는 손해에 대한 영향 없이 이루어지며, 매수인은 소 제기 권리를 보유한다.

13 - 비밀유지

계획, 명세서, 주석, 도면, 샘플, 시제품, 절차, 기계 프로토타입, 유리제품 도구, 유리용해로의 특징 및 성능 등을 포함하여 주문의 실행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납품되는 모든 문서, 모델, 사물은 비밀유지 대상 정보이며, 주문의 실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위 사항은 전적으로 상시적으로 매수인의 재산으로 유지되며, 매수인의 첫 요청시 무상으로 매수인에게 전부 반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본인에게 전송되거나 주문 실행체계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를 비밀정보로 간주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비밀로 유지한다.

본 비밀유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판매자는 주문의 실행을 위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원 또는 하도급인, 해당 정보의 엄격한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경고를 숙지한 직원 또는 하도급인에게만 위에 언급된 비밀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판매자는 자신의 직원 및 그 하도급인들이 본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14 - 정보의 제 3 자 제공

판매자는 매수인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제공처 및 제공 정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알리고 매수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만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수인의 이름이나 매수인의 식별 표시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 없이 매수인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 반부패

판매자는 청렴과 도덕성을 갖추어 최상위 수준의 경영윤리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정부 관리직(여하한 직위의 정부 임직원, 정부 산하 또는 소유 기관의 임직원, 공공국제기관의 임직원, 정치인 또는 후보 또는 그러한 자의 대리인을 포함함), 정치 정당, 또는 기타 민간부문의 개인 등과의 거래에서 뇌물, 부패, 또는 기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우위를 점하도록 여하한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 제공, 제안, 약속, 또는 금전 또는 가치에 대한 권리를 수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판매자와 여하한 VERESCENCE 직원 또는 기타 기업이나 개인 사이의 비윤리적인 사업행위나 조치를 포함합니다.

판매자는 판매자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본 일반매수조건에 예정된 활동에 적용되는 일체의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계열사, 허용된 대리인 및 직원들이 준수하도록 하기로 합의 및 확인한다.

16 - 관할-적용법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본 계약의 유효성, 해석, 이행 및/또는 해지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또는 본 계약의 변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 심의 전속적 관할로 한다.